

의안번호	제511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3월 5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11
----------	-----

제출연월일 : 2024년 3월 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충북아쿠아리움의 개관·휴관·관람시간 및 관람료(안 제3조~제5조)
- 아쿠아리움 입장 및 행위 제한, 손해배상(안 제6조~제8조)
- 시설 위탁 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9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산업단지 내 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아쿠아리움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길 43 일원으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아쿠아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명절(설날 및 추석)을 말한다)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지정한 날

제4조(관람시간) 아쿠아리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아쿠아리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입장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쿠아리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을 주거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 제한) 도지사는 아쿠아리움 관람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를 퇴관 조치할 수 있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수족관을 두드리는 등 수족관 내 생물을 놀라게 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손해배상) 도지사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아쿠아리움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도지사는 아쿠아리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국민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담수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6. “보유동물”이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위탁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이 경우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

**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수산자원에 관한 다양한 관람·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북아쿠아리움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

## 3. 관련조문

- 안 제1조(목적)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목적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기간 : 비용은 지속 발생 예상, 추계는 2024~2028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내용 :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용 산정(2024년 기확보 예산)

### 나. 추계 결과

- 아쿠아리움 관리 기간제 인건비 :  $195,594,400(5년\ 평균) \times 5년 = 977,972,000원$ 
  - 기간제 10명/년 운영(상·하반기 각 5명), 2차년도 이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4.2%(최근 3년 평균) 반영하여 추계
  - 2024년 : 179,840,000원(17,984,000원/人  $\times$  10명)
  - 2025년 : 187,363,000원(18,736,300원/人  $\times$  10명)
  - 2026년 : 195,264,000원(19,526,400원/人  $\times$  10명)
  - 2027년 : 203,465,000원(20,346,500원/人  $\times$  10명)
  - 2028년 : 212,010,000원(21,201,000원/人  $\times$  10명)
- 아쿠아리움 홍보비 :  $13,000,000원 \times 5년 = 65,000,000원$
- 전시시설 관리 등 유지보수 :  $42,500,000원 \times 5년 = 212,500,000원$
- 아쿠아리움 운영 출장비 :  $2,000,000원 \times 5년 = 10,000,000원$
- 전시생물, 사료, 소모품 구입 등 :  $141,146,000원 \times 5년 = 705,730,000원$
- 관련 장비(스킨스쿠버) 구입 :  $6,000,000원 \times 1년 = 6,000,000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재정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384,486	386,039	393,910	402,111	410,656	1,977,202	
인 건 비	179,840	187,393	195,264	203,465	212,010	977,972	
홍 보 비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유지보수비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212,500	
출 장 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 료 비	141,146	141,146	141,146	141,146	141,146	705,730	
장비구입비	6,000	-	-	-	-	6,000	
<b>재원 조달</b>	384,486	386,039	393,910	402,111	410,656	1,977,202	
자체 수입	소 계	384,486	386,039	393,910	402,111	410,656	1,977,202
	지방세	384,486	386,039	393,910	402,111	410,656	1,977,202